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31.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8. 31.

다. 상 정 일 자 : 2007. 9. 7.(제138회 임시회 자체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가. 제안사유

- 교육 문제가 지역 인구 감소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기준액을 현행 지방세의 2%범위에서 5%범위까지 확대(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 체육 및 예능·기능 진흥사업, 교육 발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구체화 함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원함(안 제5조)
 - 교육분야에 경험과 친선을 갖춘 자 2인

- 보조금 신청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는 지방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2%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2005. 7. 8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 제2조제1항 중 "2%범위"를 "5%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제외 하였으며
-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현행조례 제3조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삭제하고, 외국어 교육사업지원,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체육 및 예능·기능 진흥사업,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인원을 9명을 11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3항 3호를 보면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있어 교육공무원 2인을 교육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동항에 4호를 신설하여 교육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2인을 추가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기에 관한 명확성 제고를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 제7조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는 2항 정기회를 매년 예산편성시에 개최하는 것을 예산확정 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 제8조 보조의 신청 등에 관한 1항의 내용 중 보조금 신청서를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초·중학교는 제천시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두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간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6억원 예산액 중 현재 까지 5억7천4백2십5만4천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타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금의 지원 현황인 뒷면 참고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 예산의 2%부터 1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산시 5%, 목포시 7%, 합천군 및 태백시가 15% 등 적극적인 학교경비의 지원 확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팀에서는 2007. 8. 9일부터 8.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2007. 8.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상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제천교육청 교육장(김영호)으로부터 접수된 건으로,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5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에 면이하 급식비 지원사업 추가요청, 제8조 보조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 중 교육경비 관련업무 창구 일원화 및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예산 파악 곤란으로 중복투자 우려 존재 등을 들어 교육장이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일괄제출 하되, 교육장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각각 제천시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가 (2007. 5. 27 조례 제783호)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임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간이며 백년대계의 기초인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 질 높은 교육창출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교육경비를 5%범위내까지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어느정도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권건중 의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권건중 의원)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시 상정된 안에 대한 심사대상지를 직접 방문한 뒤 심사를 하고 있는지와 몇 년부터 심사를 하셨는지요?(강현삼 의원)

나. 답변요지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 예, 내년도에는 3%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44개교입니다.

-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신청되었으며 고등학교는 시로 신청되어 심사를 하였으며, 금번 조례시행 이후에는 심사시 직접 현장방문을 펼쳐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